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1997. 12. 31. 제15,581호)	개 정(1999. 3. 31. 제16,222호)
<p>제1조(목적) 이 영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의2(중소기업자의 범위등) ① 법 제2조(정의) 제2항제2호 본문에서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하도급계약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p> <p>② ~ ④ (생략)</p> <p>⑤ 법 제2조(정의)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레미콘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등의 지역”이라 함은 수급사업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광주광역시·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및 제주도를 말한다.</p> <p>⑥ 법 제2조(정의)제9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p> <p>1. 건설업법시행령 제4조(경미한 건설공사등)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p> <p>2. (생략)</p> <p>⑦ 법 제2조(정의)제9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p> <p>1. ~ 6. (생략)</p> <p>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p> <p>8.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관리)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p> <p>9.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시설의 시공·관리)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p>	<p>제1조(목적)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p> <p>제1조의2(중소기업자의 범위등) 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p> <p>.....</p> <p>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p> <p>2. (현행과 같음)</p> <p>⑦</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특정열사용기자재)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p> <p>8.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관리)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p> <p>9.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시설의 시공·관리)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p>

현행	개정
<p>제3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1항의 서면과 다음의 서류 또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p> <p>1. ~ 3. (생략)</p> <p>4.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 및 지연이자,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p> <p>5. 6. (생략)</p> <p>② (생략)</p> <p>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2. (생략)</p> <p><신설></p> <p>② (생략)</p> <p>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p> <p>1.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p> <p>2.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p> <p>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중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p>	<p>제3조(서류의 보존) ①</p> <p>.....</p> <p>.....</p> <p>.....</p> <p>..... 기재된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p> <p>1. ~ 3. (현행과 같음)</p> <p>4.</p> <p>.....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 내지 제8항.....</p> <p>.....</p> <p>.....</p> <p>5.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p> <p>.....</p> <p>.....</p> <p>1. 2. (현행과 같음)</p> <p>3.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p> <p>1. 원사업자의 파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p> <p>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p> <p>3.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p>

현 행	개 정												
<p>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하거나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4. 원사업자의 파산·부도·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p> <p>5. 하도급계약의 이행 보증을 요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중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제7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단체) ① 법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자단체와 각 사업자단체에 설치한 협의회가 분장하는 하도급거래의 분야는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사업자단체</th> <th style="width: 50%;">하도급거래분야</th> </tr> </thead> <tbody> <tr> <td>1. ~ 8. (생략)</td> <td>(생략)</td> </tr> <tr> <td><신설></td> <td><신설></td> </tr> </tbody> </table> <p>제12조(분쟁의 조정등) ① ~ ③ (생략)</p> <p>④ 협의회는 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생략) <신설></p>	사업자단체	하도급거래분야	1. ~ 8. (생략)	(생략)	<신설>	<신설>	<p>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2회분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p> <p>②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제외한다.</p> <p>제7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단체) ① …………… …………… …………… ……………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사업자단체</th> <th style="width: 50%;">하도급거래분야</th> </tr> </thead> <tbody> <tr> <td>1. ~ 8. (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공정경쟁협회</td> <td>제조위탁·수리위탁 및 건설위탁</td> </tr> </tbody> </table> <p>제12조(분쟁의 조정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60일 …………… ……………</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25조의3(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p> <p>②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p>	사업자단체	하도급거래분야	1. ~ 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공정경쟁협회	제조위탁·수리위탁 및 건설위탁
사업자단체	하도급거래분야												
1. ~ 8.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사업자단체	하도급거래분야												
1. ~ 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공정경쟁협회	제조위탁·수리위탁 및 건설위탁												

현행	개정
<p>제14조의2(준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 행령 제61조(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내지 제64 조(담보의 종류·평가등)의 규정은 법 제25조의 3(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납부· 징수 및 체납처분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는 사업자의 사업규모 및 납부능력,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제14조의3(준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 행령 제61의2(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내지 제 64조의3(체납처분의 위탁)</p>

기업결합신고규정위반사건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

제1조(目的) 이 기준은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이하 “法”이라 한다) 第69條의2(過怠料)第1項 第2號의 규정에 의한 過怠料 賦課의 基準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適用範圍) 이 기준은 法 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의 규정에 의거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함에 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지연신고한 자, 허위신고한 자, 이행행위 금지의무를 위반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賦課金額의 決定) ① 法 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의 규정에 의한 企業結合의 申告義務 등(이하 “申告義務 등”이라 한다)을 위반한 자에 대한 過怠料 賦課基準은 별표와 같다.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基準에 의한 過怠料의 금액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不合理한 경우에는 이 기준과 다른 금액의 過怠料를 부과할 수 있다.

제4조(違反回數의 算定) ① 위반횟수는 당해 기업결합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申告義務 등의 違反으로 인하여 公正去來委員會로부터 警告를 받거나 過怠料 賦課處分을 받은 횟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合併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위반횟수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合併으로 인하여 신설 되는 회사의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데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商法 第530條의2(會社의 分割·分割合併)의 규정에 의한 회사분할의 경우 分割 會社의 위반횟 수는 分割新設會社의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데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이 基準 시행 이전에 申告義務 등의 違反으로 경고를 받은 횟수는 위반횟수 산정시 합산한다.